

##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법인 또는 기관명			
	대표자	사업자등록번호		
	생년월일			
	전화번호			
	주소			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4조에 따라  
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정관 1부 2. 측량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1부 3. 측량장비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1부	수수료 없음
국토지리정보원장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국가기술자격증(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)	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### 처리절차

